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10654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개요	4
2. 국회 비준동의 사유	5
3. 주요 내용 검토	8
4. 종합의견	16
※ 참고자료	19
1. 「선박재활용협약」 개요	19
2.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요건 및 비준 국가 목록	20
3.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계획	21
4. 「선박재활용협약」 의무사항 및 국내법과의 연관성	23
5. 국회 동의 여부(법제처 심사결과)	24
6. 우리나라의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활동 현황	30
7. 선박 재활용(해체)시설 현장사진	3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일자 : 2025년 6월 2일
3. 회부일자 : 2025년 6월 4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이 협약의 가입을 통하여 선박재활용 계획, 선박재활용시설 요건 및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등 선박재활용 활동에서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선박 안전과 인간의 건강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의 유해물질 관리 및 재활용 준비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및 제5조, 부속서 제2장).

- 1) 선박에 유해물질의 설치나 사용을 금지·제한하고, 유해물질목

록을 작성·비치하며 전 운항 수명 동안 유지·갱신하도록 규정함
(안 부속서 제4규칙 및 제5규칙).

2) 선박이 검사 후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재활용준비증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10규칙부터 제14규칙까지).

3) 선박재활용 시 인증받은 선박재활용시설 등에서 재활용되고 선박재활용계획을 승인받도록 함(안 부속서 제8규칙 및 제9규칙).

나.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선박재활용시설계획의 수립 및 유해물질의 처리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및 제6조, 부속서 제3장).

1) 선박재활용시설은 협약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문서 및 현장점검을 통한 검증 후에 인증을 받도록 함(안 부속서 제16규칙).

2) 선박재활용시설은 작업자의 안전과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한 선박재활용시설계획을 준비하고, 폭발, 화재 및 그 밖의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방지하는 절차를 수립·활용하도록 함(안 부속서 제18규칙 및 제19규칙).

3) 선박재활용 시 유해물질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제거되도록 하고, 비상 대비·대응 계획의 수립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부속서 제20규칙부터 제22규칙까지).

다.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정보 제공, 협약 준수 여부 결정을 위한 선박 점검, 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의 협약 위반에 대한 탐지, 국제기구 보고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1) 선박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음이 탐지된 경우 점검을 수행한 당사자는 그 선박에 경고, 억류, 퇴거 또는 당사자의 항구로부터 퇴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

2) 선박이 협약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 주관청의 법에 따라, 선박 재활용시설이 협약 요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당사자의 법에 따라 제재가 정해짐(안 제10조제1항).

3. 가입 시 선언사항¹⁾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에 가입하면서 별지와 같이 선언함.

4.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관련 국내법 제정 중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추진경위

○ 2009. 5. 15. 원협약 채택

○ 2023. 6. 26. 원협약 발효요건 충족

1) 선언

이 협약 제16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은 선박이 자국의 인증받은 선박재활용시설(들)에서 재활용되기 전에 선박재활용계획에 대한 **명시적 승인**이 요구된다고 선언한다.

☞ 협약 본문 제16조제6항은 협약의 기속적 동의 표명 시, 선박재활용계획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승인을 요구할지 여부를 선언하도록 되어있음.(별지는 국영문 가입안 마지막 페이지에 있음)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명시적 승인을 선언함.

※ 선박재활용계획의 암묵적 승인을 선언한 국가(권한있는 당국): 선박재활용계획 승인을 접수 한 날로 14일 내에 서면 의의를 통보해야 하고, 별도의 서면 의의가 없으면 선박재활용계획을 승인(암묵적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선박재활용계획을 명시적 승인을 선언한 국가: 선박재활용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서면통보를 해야한다.

- 2025. 5. 21. 제20회 차관회의 심의²⁾
- 2025. 6. 26. 원협약 발효

Ⅲ. 검토의견

1. 개요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구성요소 및 재료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처리(선박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사고 및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³⁾(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채택하였고, 동 협약은 2023. 6. 26. 협약 발효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2년 뒤인 2025. 6. 26. 국제적으로 발효⁴⁾되었음.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요건 및 현황〉

발효 요건	국제협약 제17조(협약의 발효) 이 협약은 아래의 조건이 만족되는 날로부터 24개월 후에 발효된다 1. 1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해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에 필요한 문서를 기탁한다. 2. 1에서 언급된 국가들의 상선 선박량의 합계가 세계 상선 선박량 총톤수의 40% 이상이다. 3. 1에서 언급된 국가들의 지난 10년 간 합계 연간 선박재활용 실적의 최대치가 동 국가들의 상선대 총톤수의 3% 이상이다.
현황	협약은 2023. 6. 26. 발효 요건이 충족되어 2025. 6. 26. 발효

2) 이후 2025. 5. 28. 제2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됨.

3) [참고자료 1] 「선박재활용협약」 개요 참조

4) [참고자료 2]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요건 및 비준 국가 목록 참조

정부가 제출한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이하 “가입안”이라 함)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선박 안전, 인체 건강 및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려는 것임.

<선박재활용협약 주요내용>

- 선박은 석면, 중금속 등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여 정부의 검사를 받은 후 적합증서를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 *해야 함
 - * 신조선: 협약 발효일('25.6.26) 이후 적용, 현존선: 협약 발효일 5년 후('30.6.26) 적용
- 선박재활용시설은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체계, 유해물질 처리절차 등을 수립하여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재활용(폐선) 예정선박은 선박재활용 계획 마련 후 정부 승인 받고, 정부에서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을 통해 재활용(해체) 가능
- 선박이 다른 당사국의 항구, 터미널 등에 입항한 경우 그 당사국의 검사관이 협약의 이행 여부를 검사할 수 있음

2. 국회 비준동의 사유

가입안은 협약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선박에 대해 유해물질목록을 선상에 비치하고, 검사를 통해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또는 국제재활용준비증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협약은 이러한 증서의 보유 여부를 타국 항만 공무원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억류, 퇴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기록부 비치 및 기록 의무⁵⁾, 해체 전 작업계획 신고의무⁶⁾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협약에서 요구하는 증서 발행·검증 제도나 위반 시 제재 조치를 규정한 명시적인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협약 제6조⁷⁾는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협약 제10조⁸⁾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자국법에 따라 충분한 강도

5) 「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①선박의 선장(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은 그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운반·처리하는 폐기물·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부(이하 “선박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그 선박(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의 사무실을 말한다) 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운반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폐기물기록부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처리량 등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동 처리대장으로 갈음한다.

2. 기름기록부 :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사용량·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를 제외하며, 유조선의 경우에는 기름의 사용량·처리량 외에 운반량을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3. 유해액체물질기록부 : 선박에서 산적하여 운반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운반량·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②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①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육지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작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해역관리청은 방치된 선박의 해체 및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장비 등을 갖춘 선박처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7)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제6조(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하에 운영되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 또는 이 협약 제3조제4항에 따라 유사하게 취급되는 선박을 재활용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이 부속서의 규칙에 따라 인증받도록 보장한다.

8)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제10조(위반)

1. 이 협약의 요건에 대한 모든 위반은 국내법에 따라 금지되며,

가. 선박의 경우 위반이 발생한 장소를 불문하고, 제재는 그 주관청의 법에 따라 정해진다. 주관청은, 어느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위반을 통지받은 경우, 그 사안을 조사하며, 위반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의 제공을 신고한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주관청은, 위반혐의에 관하여 소송절차에 회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자국의 법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한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주관청은 취해진 모든 조치를 위반혐의를 신고한 당사자와 기구에 신속하게 통지한다. 주관청은, 정보를 접수한 후 1년 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위반혐의를 신고한 당사자와 기구에 신속하게 통지한다.

나. 선박재활용시설의 경우, 제재는 해당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당사자의 법에 따라 정해진다.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그러한 위반을 통지받은 경우, 그 사안을 조사하며, 위반혐의에 대

의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국내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결국,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서 발급, 선박재활용시설 인증, 위반 시 제재 등 다수의 제도적 기반을 국내법에 새로 마련하거나 보완해야 하므로, 이는 헌법 제60조제1항⁹⁾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¹⁰⁾

현재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¹¹⁾하기 위한 「선박재활용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 회부¹²⁾되어 심의 중에 있으며, 동 법안은 유해물질 관리, 선박 및 재활용시설의 검사·인증 절차, 관계기관의 감독 권한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 추가적인 증거의 제공을 신고한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반혐의에 관하여 소송절차에 회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자국의 법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한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당사자는 취해진 모든 조치를 위반혐의를 신고한 당사자와 기구에 신속하게 통지한다. 당사자는, 정보를 접수한 후 1년 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위반혐의를 신고한 당사자 및 기구에 통지한다.

2. 어떠한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든 이 협약 요건의 어떠한 위반도 금지되며, 제재는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한 위반이 발생한 때에는 언제든 그 당사자는

가. 자국의 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나.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위반이 발생했다는 정보와 증거를 선박의 주관청에 제공한다.

3. 이 조에 따라 어느 당사자의 법에 따라 규정된 제재는 이 협약의 위반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든지 간에 그 위반을 억제하기에 적합한 강도여야 한다.

9)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0) [참고자료 5] 국회 동의 필요 여부 등 법제처 심사결과 참고

11) [참고자료 4] 「선박재활용협약」 의무사항 및 국내법과의 연관성 참조

12) [2205724]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2024. 11. 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참고자료 3]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계획 참조

3. 주요 내용 검토

(1) 협약의 구성체계

협약은 21개 조문과 부속서(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규칙)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는 총 4개의 장과 25개의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선박재활용협약 주요 내용 〉

조문	주요 내용
제1조~제3조	일반 의무, 정의, 적용대상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에 적용 * (적용제외 선박) ▲군함·해군보조함·국가소유 비상업 선박, ▲사법 통제권하에 있는 해역에서만 평생 운항하는 선박
제4조~제11조	선박재활용에 관한 통제, 선박의 검사 및 증서 발행,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정보 교환, 선박 점검, 위반 탐지, 위반, 선박의 부당한 지연 또는 억류 당사국의 의무 * 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 * 선박재활용시설은 이 협약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함
제12조~제13조	정보 전달, 기술 지원 및 협력,
제14조~제15조	분쟁 해결, 국제법 및 다른 국제협약과의 관계 분쟁해결 * 분쟁이 있는 경우, 화해, 중재, 사법 재판 등 관련국이 합의한 방법으로 해결
제16조~제21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발효, 개정, 폐기, 기탁, 언어

〈 부속서 주요 내용 〉

조문	주요 내용
제1장 일반규정 <제1규칙~제3규칙>	정의, 일반적용, 그 밖의 기준, 권고 및 지침과의 관계 적용대상 * 별도 규정이 없으면, 선박의 설계부터 재활용까지 모든 절차는 이 부속서 규정에 따름
제2장 선박에 대한 요건 <제4규칙~제14규칙>	선박 유해물질의 통제, 유해물질목록, 부록 1 및 2의 개정 제안 절차, 기술 그룹, 일반 요건, 선박재활용계획, 검사, 증서 발행 및 이서, 증서 양식, 증서 기간 및 효력 선박 요건 * 유해물질목록 선박에 비치(신조선: 즉시, 현존선: 5년 이내) * 선박은 공인된 재활용시설에서만 해체 가능 *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발급·비치 *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 발급
제3장 선박재활용시설 요건 <제15규칙~제23규칙>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한 통제,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일반 요건, 선박재활용시설계획,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지,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관리, 비상 대비 및 대응, 작업자 안전 및 훈련, 사건, 사고, 직업병 및 만성적 영향에 대한 보고 선박재활용시설 요건 * 선박재활용시설 사용계획서 * 선박재활용시설 인증 *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 사람의 건강, 환경, 사고 예방을 위한 절차 수립·이행 * 작업자에게 교육 및 훈련 시행, 각종 보호장비 지급 * 유해물질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거
제4장 보고요건 <제24규칙~제25규칙>	최초 통보와 보고 요건, 완료 후 보고 보고 요건 * (선주) 재활용 의사 사전 서면 통보 * (선박재활용시설) 선박재활용계획 제출 * (선박재활용시설) 선박재활용 완료 후 14일 이내 보고서 제출

협약은 ①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되고, 이러한 ② 선박을 재활용(폐선)하기 위한 시설(재활용시설)에 적용됨. 이에 가입동의를 관련하여 선박과 재활용시설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선박에 대한 요건

협약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운항선박에 대하여 ① 선박 검사, ②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국제재활용준비증서 비치 의무, ③ 선박재활용 사전준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부속서 제2장(선박에 대한 요건) 제8규칙에서 재활용을 위한 선박의 일반요건을 기술하고, 이후 증서 발행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음.

제2장 선박에 대한 요건
제2절 선박재활용을 위한 준비 - 제8규칙 일반 요건
재활용 예정인 선박은, 가. 다음과 같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만 재활용된다. 1) 이 협약에 따라 인증 받은 선박재활용시설, 그리고 2) 선박재활용계획에서 특정 선박재활용시설(들)이 수행하도록 명시한 모든 선박재활용을 실시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진 선박재활용시설 나. 선박재활용시설에 들어가기 전의 기간에 화물잔류물, 잔존 연료유 및 선상 잔존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한다. 다. 탱커의 경우, 선박재활용시설이 운영되는 관할권을 가진 당사자의 국내 법령 및 정책에 따라서 진입안전이나 화기작업안전 또는 둘 모두에 대한 증서 발행이 준비된 상태로 화물 탱크와 펌프실(들)이 있는 선박재활용시설에 도착한다. 라. 제9규칙에 따라 필요한 선박재활용계획을 고안하기 위하여 선박에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선박재활용시설에 제공한다. 마. 제5규칙에 따라 필요한 유해물질목록을 완성한다. 그리고 바. 모든 재활용 활동을 하기 전에, 주관청이나 주관청이 인정한 기관을 통하여 재활용 준비가 되었다는 증서를 발행받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 선사의 경우 약 692척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함. 정부는 새로 건조되는 선박과 유럽 지역에

기항하는 선박은 협약 의무사항을 이미 이행 중¹³⁾이며, 그 외 선박의 경우도 유예기간이 있어 적용기한('30.6.26.)까지¹⁴⁾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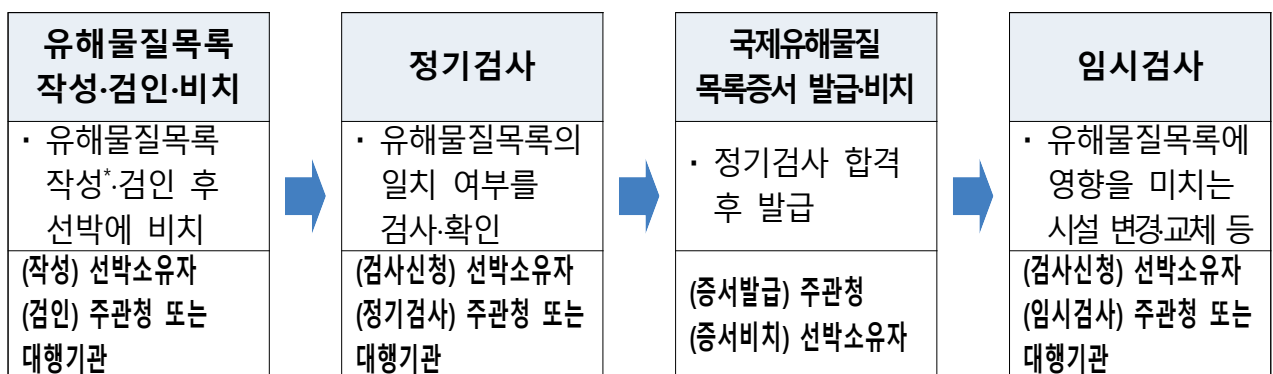
<국적선사의 선박재활용협약 적용대상 선박>

구분	현존선	척수
500톤 이상	내항선	978
	외항선(국제항해)	692*
500톤 미만	내항선	6,643
	외항선(국제항해)	147

※ 출처: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통계(2025.1.17. 현황)

그런데, 협약에서 선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국내법에는 존재하지 않아, 정부는 국내법 제정 추진을 통하여 선박 유해물질 관련 검사 절차를 마련 중에 있음.

<유해물질목록 작성 및 검사체계>¹⁵⁾



* (신조선) 기자재 공급자가 납품 시 제공하는 유해물질정보를 취합하여 작성

(현존선) 선박도면, 설명서 등 정보 수집 후 육안·표본검사 등을 통해 유해물질목록을 작성

13) 유럽집행위는 '20.12.31.부터 협약에 준하는 “선박재활용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

14) 현존선은 유해물질목록 작성 및 적합증서 비치 5년간 유예

15)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박재활용법안」의 내용을 근거로 함.

정부는 당초 협약 발효 이전에 협약 가입과 이행법률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동 가입안은 협약 발효일인 금년 6월 26일보다 조금 앞선 6월 2일에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행법률 또한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중¹⁶⁾으로 가입동의 및 이행법률 제정 추진이 늦어진 점은 아쉬움이 있음.

협약은 선박 점검, 위반 탐지 및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국적선이 협약 비준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선박유해물질목록증서 또는 재이용준비증서를 비치하지 못하면 억류, 퇴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협약 제3조제4호¹⁷⁾는 비체약국 선박이 더 유리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가입 상태에서는 국적선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협약상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 선박이 국제항만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저하, 산업계의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바, 정부는 국내 입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6) [2205724]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2024. 11. 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계류 중

17)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제3조(적용)

4. 이 협약 비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러한 선박에 이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협약상 요건을 적용한다.

(3) 선박재활용시설 요건

국내 선박재활용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¹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선박 해체시설¹⁹⁾로 신고 및 운영 중인 업체가 총 156개²⁰⁾ 정도 있으나, 협약이 요구하는 안전·환경 관리체계와 국제인증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²¹⁾가 있음.

실제로 전세계 선박재활용 실적의 90% 이상이 방글라데시, 인도,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해외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시설의 활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국가별 선박재활용 현황(2023년~2024년)²²⁾>

구분	2023년		2024년	
	실적 ²³⁾ (총톤수)	비율(%)	실적(총톤수)	비율(%)
방글라데시	3,334,357	44.6	2,737,746	43.2
인도	2,366,594	31.6	2,146,752	33.9
튀르키예	531,283	7.1	469,563	7.4
파키스탄	511,794	6.8	454,761	7.2
그 외 지역	734,318	9.8	532,324	8.4
전 세계	7,478,346	100	6,341,146	100

자료: 해양수산부

18)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 시·도지사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신고·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9) 일반적으로 선박해체시설에서 선박의 해체와 재활용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짐.

20) 경남(46), 전남(33), 제주(20), 강원(19), 부산(17), 경북(12), 충남(6), 울산(3) 순임.

21) 국내 해체업체는 선박해체 시 부지를 임대하여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형태로 협약에서 요구하는 친환경·안전시설 인증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움 토로

22) U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누리집, 2025년 6월 10일 현황 게시 통계

＜ 국내 선박재활용(해체) 실적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척수		109	262	207	152	90
전체 톤수		86,501	154,356	133,655	88,756	51,030
500톤 이상	척수	41	68	67	46	26
	톤수	72,439	120,671	105,271	70,920	39,142
500톤 미만	척수	68	194	140	106	64
	톤수	14,062	33,685	28,048	17,836	11,888

* (출처) 해양수산부 용역 보고서 자료('20~'22 실적) 및 해양경찰청 통계자료('23~'24 실적)

협약상 선박재활용시설 소유자(선박해체 사업자)는 정부 승인을 득한 후 사업하며, 협약 기준에 적합한 선박만 해체가 가능하고, 선박해체 시 각 해체 선박마다 정부로부터 재활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협약에 따른 시설 및 엄격한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따라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에 따라 기존 국내의 선박해체시설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재활용시설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홍보와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정부는 정책설명회 개최 및 선박해체시설 현장 방문을 통해 국제협약 발효 및 국내법 마련 현황 등을 공유하였으며, 국내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절차와 필수 제출서류인 선박재활용시설계획서(표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국내 선박재활용시설의 국내외 인증(유럽 등) 등 지원을 위하여 R&D 기획연구²⁴⁾를 진행 중이라고 함.

23) 해당 국가의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선박재활용(폐선) 처리된 선박의 총톤수 합산량

24) ①선박해체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 기술개발, ②선박 유해물질목록 및 선박재활용 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 ③시설 인증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등 시행

□ 설명회 결과(1차, '24.5.2., 세종)

- (참석자)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해양환경정책과, 항만운영과), 고용부, 해경청, 한국선급, KOMSA, 해운협회, 전국선박해체사업자협회 등
- (결과) 열악한 국내 선박해체업 사정으로도 협약수용은 어려운 현실이며 중소형 조선소도 환경문제로 해체업을 영위 곤란하다는 해체사업자 의견 등
- ☞ 협약 적용선박은 사고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모두 국외(방글라데시 등)에서 재활용되므로 국내시설의 수용 필요성은 낮음을 설명

□ 설명회 결과(2차, '24.9.10., 부산)

- (참석자) 정부(해수부, 해경청 등), 해운선사, 검사대행기관(KR, KOMSA), 한국해운협회,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해운조합 등
- (내용) 협약 이행사항, IMO 정책 공유, 협약가입 및 국내법 제정동향 등 소개

협약 가입 이후 국내 시설의 활용 관련, 국내외 선박들의 국내 시설 이용 증가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관련 산업 성장률 대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문제, 시설 주변(해역) 환경 문제 및 지역 주민 건강·위생 문제 등 종합적인 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⁵⁾

(4) 기타

그밖에,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적 동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유럽연합(EU)은 이미 2018년부터 'EUSRR(EU Ship Recycling Regulation,

25) 중국은 2017년 7월 “양라지 수입 금지를 통한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제도 개혁에 관한 시행 방안(關於禁止洋垃圾入境推進固体废物進口管理制度改革實施方案)”을 실시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함. 이에 2019년 1월부터 중국은 외국선박들의 중국 해체장 내 폐선 및 해체작업을 금지한다고 발표함. (출처: 이현균 「선박재활용협약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p.47,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2호(2019년 11월))

유럽연합 선박재활용 규정' 제도를 시행하여 회원국 선박은 EU가 승인한 해체시설에서만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규제 강화로 향후 노후 선박 해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협약 이행 여부는 해운·조선업계의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음.

특히 EU, 일본 등 조선소를 보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박재활용 협약과 유사한 규정들을 제정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해운업계에서 선박해체 의뢰를 받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주요 선박 해체 작업장을 소유한 국가들은 선박해체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박재활용협약과 유사한 규정들을 제정하고 있음.²⁶⁾

이에 선박재활용에 대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이행법 정비와 관련 산업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종합의견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인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한 협약으로, 동가입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을 포함하므로

26) 「선박재활용협약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이현균, 한국해법학회지 41권 2호 (사)한국해법학회, 2019. 11.

국회 동의를 필요함.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²⁷⁾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선박 안전, 인간의 건강 및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협약 가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협약 발효 후 의무 조항 미이행 시 국적선박 운항 차질, 재활용시설 수용거부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적 선박이 선박재활용협약 요건(선박유해물질목록 등)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선박출항정지²⁸⁾ 등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국내시설이 선박재활용시설로 국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협약 적용 대상 선박(500톤이상 외항선)의 해체 및 재활용 작업이 불가능바, 협약 가입 및 국내법 마련은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정부는 동 협약 가입의 후속조치로 국내법 체계에 맞도록 이행법률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동 협약의 가입은 협약 발효일 이후 의무조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고, 선박재활용 활동에서의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의의가 있는바, 조속한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관계부처에서도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견

27) [참고자료 6] 우리나라의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활동 현황 참조

28) 국내외 항만국검사 시, 국제협약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선박 출항정지도 가능

이 없다고 설명함.

문 의 처
02) 6788-5266

□ 협약 개요

- (협약명*)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 협약

*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 2009년 5월 홍콩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일명 "홍콩협약"으로도 칭함

- (목적) 선박재활용(해체) 과정에서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주기 보전·환경 보호
- (대상) 국제항해 선박(총톤수 500톤 이상)과 육상 재활용(해체) 시설
- (발효일자) '25.6.26 (협약 발효 요건 충족* 시점에서 2년 후 발효)

* '23.6.26. 라이베리아(선박량 15.69%)와 방글라데시(재활용실적 1.37%, 선박량 0.2%)가 선박재활용협약을 비준(가입)하면서 발효 요건을 충족하였음

□ 협약 주요내용

-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석면, 중금속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부 검사 후 발급된 적합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함

* 신조선: 협약 발효일('25.6.26) 이후 적용, 현존선: 협약 발효일 5년 후('30.6.26) 적용

- 선박재활용시설은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체계, 유해물질 처리절차 등을 수립하여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재활용(폐선) 예정선박은 선박재활용 계획 마련 후 정부 승인 받고, 정부에서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을 통해 재활용(해체) 가능
- 우리나라 선박이 다른 당사국의 항구, 터미널 등에 입항한 경우, 그 당사국의 검사관이 협약의 이행 여부를 검사할 수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참고자료 2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조건 및 비준 국가 목록

□ **협약 발효요건:** 아래 비준요건 충족('23.6.26) 후, 2년 뒤 발효('25.6.26)

- (비준국) **1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 국가들이 아래의 전체 선복량 및 재활용 실적(최근 10년) 요건을 만족해야함
- (선복량) 비준국가들의 선박 총톤수가 전세계 선박의 **40% 이상**
- (재활용 실적) 비준국가들의 최근 10년 간 선박재활용 실적이 전세계 선박재활용 실적의 **3% 이상**

< 협약 발효 조건 및 현황('23.6.26. 기준) >

구분	비준국	선복량	선박재활용실적
발효 조건	15개국	40%	3%
현황	22개국	45.81%	3.31%

* ('23.6.26.) 라이베리아(선복량 15.69%)와 방글라데시(재활용실적 1.37%, 선복량 0.2%)가 선박재활용협약을 비준(가입)하면서 발효 요건을 충족함

□ **협약 체결국** *'25.5.1. 기준

순번	국가명	비준일자	비고	순번	국가명	비준일자	비고
1	노르웨이	2013. 6. 26.	가입	13	독일	2019. 7. 16.	가입
2	콩고	2014. 5. 19.	가입	14	가나	2019. 11. 18.	가입
3	프랑스	2014. 7. 2.	비준	15	인도	2019. 11. 28.	가입
4	벨기에	2016. 3. 7.	가입	16	크로아티아	2021. 2. 16.	가입
5	파나마	2016. 9. 19.	가입	17	스페인	2021. 6. 3.	가입
6	덴마크	2017. 6. 14.	가입	18	룩셈부르크	2022. 7. 29.	가입
7	튀르키예	2019. 1. 31.	비준	19	상투메프린시페	2022. 8. 15.	가입
8	네덜란드	2019. 2. 20.	비준	20	포르투갈	2023. 3. 28.	가입
9	세르비아	2019. 3. 22.	가입	21	방글라데시	2023. 6. 26.	가입
10	일본	2019. 3. 27.	가입	22	라이베리아	2023. 6. 26.	가입
11	에스토니아	2019. 4. 25.	가입	23	파키스탄	2023. 11. 30.	가입
12	몰타	2019. 5. 14.	가입	24	마셜 제도	2024. 1. 18.	가입

* (비준) 선박재활용협약 채택 후, 서명기간('09.9.1.~'10.8.31) 내 서명한 국가들이 이후 국가의 지속적 동의 표시(서명국 중 세인트키츠네비스 및 이탈리아는 협약 미비준)
(가입)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이, 서명기간 이후 국가의 지속적 동의 표시

*자료: 해양수산부

□ 국내법 수용 방안

- (국내법 마련) **IMO의 국제 선박재활용협약**(본문, 부속서, 부록 및 결의서 등)을 바탕으로 국내법 반영을 위한 법령안 마련

⇒ 기존 국내법 관련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 결정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보건, 유해물질의 안전한 제거 등, (해양환경관리법) 선박 해체 신고 및 해양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 등

□ 정비대상 이행법령

법령명	주요 내용	추진현황
선박재활용법 (제정)	• 선박의 유해물질 관리 및 재활용시설의 인증, 선박 및 재활용시설의 출입검사, 항만국통제 등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제정기한: 협약 발효 전 ²⁹⁾ • 추진계획 △법률안 발의: '24.11.20.(의원발의) △의견조치 및 국회 제출·심의: '24.11월 △공포완료: 국내 발효 시
선박재활용법 시행령 (제정)	•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 개선명령, 권한위임 사항 등 협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제정기한: 협약 발효 후 • 추진계획 △시행령안 법제처 제출 예정: '25.下
선박재활용법 시행규칙 (제정)	• 선박유해물질목록 검인·유지, 선박재활용 준비, 선박재활용시설계획서의 작성 등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제정기한: 협약 발효 후 • 추진계획 △시행규칙안 법제처 제출: '25.下

29) 해양수산부는 협약이 발효되는 2025. 6. 26. 이전 가입동의안 및 제정법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정세 및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계획이 지연되어 협약 발효 이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선박재활용법 제정안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 대한민국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선박재활용시설에 적용하며, 수리 등 목적으로 일시 국제항해선박은 제외
- (제2장 선박의 유해물질 관리 및 선박재활용) 유해물질목록 작성·검인 및 유지·관리, 재활용 준비*, 정가·임시·최종검사, 재활용 시작·완료 통지 등
 - * 인증받은 국내 또는 협약 당사국 정부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하며, 시설에서 재활용 前 화물잔류, 폐기물 등 최소화 조치, 출입 및 열작업 안전 조치 등 의무
- (제3장 선박재활용시설)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유효기간 및 중간 인증심사, 재활용시설 인증의 취소, 선박재활용계획의 승인
 - * 선박재활용업자는 선박재활용시설 계획서를 갖추어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를 발급(유효기간 5년, 중간인증심사 必)
- (제4장 감독) 선박 및 재활용시설의 출입검사*, 항만국통제
 - * (선박) 유해물질목록이 적합하게 작성·유지되는지 확인, (시설) 재활용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위반 사항이 식별되었거나 통보를 받은 경우 조사 후 개선명령 등 규정
-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검사 등의 대행*, 외국정부의 검사 인정, 수수료, 선박재활용 실태조사, 위임 및 위탁, 벌칙 및 과태료
 - * 검사기관(KOMSA, 선급)의 선박검사, 유해물질목록 증서 발급,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등

*자료: 해양수산부

참고자료 4

「선박재활용협약」 의무사항 및 국내법과의 연관성³⁰⁾

제1장 일반	유사 국내법
✓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에 적용 * (적용제외 선박) ▲군함·해군보조함·국가소유 비상업 선박, ▲사법 통제권하에 있는 해역에서만 평생 운항하는 선박	없음. 제정 필요
제2장 선박에 대한 요구 사항	유사 국내법
✓ 유해물질목록 선상 비치(신조선: 즉시, 현존선: 5년 이내) ✓ 선박재활용시설에서만 재활용 ✓ 재활용 행위를 하기 전에 재활용준비 승인 ✓ 선박재활용시설은 선박재활용계획 마련 ✓ 선박재활용시설 인가당국이 선박재활용계획 승인 ✓ 유해물질목록 국제증서(유효기간 5년) 발급	없음. 제정 필요
제3장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	유사 국내법
✓ 선박재활용시설 인가 및 인증서(유효기간 5년) 발급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시설 ★공유수면법 점사용허가
✓ 작업자·인근주민 안전 등을 위한 관리 체계·절차·기술 수립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영향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개선계획
✓ 재활용시설 계획 준비	★해양환경관리법 선박해체 작업계획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한 절차 마련·이용 * 열작업 조건·절차 수립 및 점검, 폐쇄된 공간 출입 조건·절차 수립 및 점검, 기타 직업병 방지 절차, 환경위험 물질 유출 및 배출 방지 절차 등	★산업안전보건법
✓ 모든 유해물질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거 보증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성 평가, 석면조사, 석면조사기관, 석면해체
✓ 유해물질 관리·제거에 대한 친숙화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방지인 자격·업무
✓ 제거된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안전·친환경적인 관리 보증	
✓ 제거된 폐기물은 공인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이송	★해양환경관리법 오염물질 수거·처리 ★공유수면법 금지행위 ★폐기물관리법 분석기관, 보관시설
✓ 비상 대비와 대응계획 수립·유지 * 훈련, 응급상황시 필요한 장비와 절차 마련, 정기적인 훈련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시설 비상오염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교육
✓ 작업자에게 개인보호장구 등 제공 및 친숙화 보장 * 머리·안면·눈·손·발·호흡기·청력 보호장비, 방사능 오염 예방 도구, 낙하 예방, 의복 등	★산업안전보건법
✓ 사건·사고 만성적 영향에 대한 보고	
제4장 보고 시 요구 사항	유사 국내법
✓ (선주) 재활용 의도 통보 및 재활용준비 국제증서 발급	없음. 제정 필요
✓ (선박재활용시설) 의도 통보 후 선박재활용 시작 보고	
✓ (선박재활용시설) 완료 보고	

30) 22057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p60

국회 동의 여부 등 심사결과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안]

1. 주요 내용

- 이 협약의 가입을 통하여 선박재활용계획, 선박재활용시설의 요건 및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 등 선박재활용 활동에서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선박 안전과 인간의 건강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임.

2. 주요 검토사항

-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바,
 - 이 가입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해당 여부

- 이 가입안 제5조에서 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자국의 권한하에 운항 중이며 검사 및 증서 발행 대상인 선박이 이 협약 부속

서(이하 “부속서”라 함)의 규칙에 따라 검사되고 증서를 발행받도록 보장하면서, 해당 선박에 대해 부속서 제5규칙에서는 선박 구조물 또는 장비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기재한 유해물질목록을 선상에 비치하도록 하고, 부속서 제11규칙에서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 후에는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가, 최종검사 후에는 국제재활용준비증서가 각각 발행되도록 하며, 이 가입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당사자가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공무원은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또는 국제재활용준비증서가 선박의 선상에 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이 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음이 탐지된 경우 경고·억류·퇴거·퇴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와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 및 제132조제4항에서 선박의 선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처리량,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사용량·처리량, 선박에서 산적하여 운반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운반량·처리량에 대한 기록부를 그 선박 안에 비치·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 가입안에 따른 선박 비치 대상인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국제재활용준비증서의 발행·검증 및 위반 시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 가입안 제6조에서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하에 운영되고 이 가입안이 적용되는 선박 등을 재활용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이 부속서의 규칙에 따라 인증되도록 보장하면서, 부속서 제8규칙에서 재활용예정인 선박은 이 가입안에 따라 인증받은 선박재활용시설 등에서만 재활용되도록 규정함.
- 이와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에서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이 가입안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에 관한 규정과 재활용예정인 선

박을 인증받은 선박재활용시설 등에서만 재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 가입안 제10조에서 이 협약 요건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그 당사자 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면서 그 위반을 억제하기에 적합한 강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환경관리법」 등 국내 법률에는 이러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가입안	관련 법률
제5조 선박의 검사 및 증서 발행 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자국의 권한하에 운항 중이며 검사 및 증서 발행 대상인 <u>선박이 부속서의 규칙에 따라 검사되고 증서를 발행받도록 보장한다.</u> 제5규칙 유해물질목록 1. <u>각 신선은 유해물질목록을 선상에 비치한다.</u> 그 목록은, 기구가 고안한 지침과 지침에 포함된 임계치와 면제를 고려하여,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권한을 부여한 어느 사람 또는 기관에 의하여 검증된다. 이 유해물질목록은 각 선박에 특정되도록 하며, 해당 목록에는 최소한 가. 이 협약의 부록 1 및 2에 열거되고 <u>선박 구조물 또는 장비에 포함된 유해물질과 그 유해물질의 위치 및 대략적인 양을 제1부에서 밝힌다.</u> 그리고 나. (생략) 2. <u>현존선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 5년 이내에 또는 재활용이 이보다 더 빠른 경우 재활용을 하러 가기 전에, 기구가 고안한 지침 그리고 검사 및 증서에 대한 기구의</u>	* 해당 규정 없음 「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① <u>선박의 선장(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은 그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운반·처리하는 폐기물·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부(이하 “선박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그 선박(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의 사무실을 말한다) 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운반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u> 1. <u>폐기물기록부</u>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u>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처리량 등을 기록하는 장부.</u> (단서 생략) 2. <u>기름기록부</u> : <u>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사용량·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u> (단서 생략) 3. <u>유해액체물질기록부</u> : <u>선박에서 산적</u>

조화제도를 고려하여, 실행가능한 한 제1항에 부합하도록 한다. (이하 생략)

3. • 4. (생략)

부속서 제11규칙 증서 발행 및 이서

1.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는, 기구가 고안한 지침을 고려하여, 최초검사와 최종검사 모두 동시에 실시되는 현존선을 제외하고, 제10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제10규칙에 따라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 주관청이나 주관청이 권한을 부여한 모든 사람 또는 기관에 의해 발행된다.

2. ~ 10. (생략)

11. 국제재활용준비증서는,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및 기구가 고안한 지침을 고려하여, 제10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제10규칙의 규정들에 따른 최종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권한을 부여한 모든 사람이나 기관에 의하여 발행된다.

12. (생략)

제8조 선박 점검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은 다른 당사자의 어떤 항구나 연안 터미널에서든, 그 선박이 이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가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공무원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모든 점검은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또는 국제재활용준비증서가 선상에 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이러한 증서는 유효한 경우 수락된다.

2. (생략)

제9조

하여 운반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운반량 · 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제132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자

3의2. ~ 18. (생략)

* 해당 규정 없음

* 해당 규정 없음

위반 탐지

1. • 2. (생 략)

3. 선박이 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음이 탐지된 경우, 점검을 수행한 당사자는 그 선박에 경고, 억류, 퇴거 또는 당사자의 항구로부터 퇴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한 당사자는 관련 선박의 주관청과 기구에 이를 즉시 통지한다.

4. (생 략)

제6조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하에 운영되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 또는 이 협약 제3조제4항에 따라 유사하게 취급되는 선박을 재활용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이 부속서의 규칙에 따라 인증받도록 보장한다.

부속서 제8규칙 일반 요건

재활용 예정인 선박은,

가. 다음과 같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만 재활용된다.

- 1) 이 협약에 따라 인증 받은 선박재활용시설, 그리고
- 2) 선박재활용계획에서 특정 선박재활용시설이 수행하도록 명시한 모든 선박재활용을 실시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진 선박재활용시설

나. ~ 바. (생 략)

제10조 위반

1. 이 협약의 요건에 대한 모든 위반은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①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육지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 략)

* 해당 규정 없음

* 해당 규정 없음

국내법에 따라 금지되며,

가.·나. (생략)

2. 어떠한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든 이
협약 요건의 어떠한 위반도 금지되며, 제재
는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정해진다.

가.·나. (생략)

3. 이 조에 따라 어느 당사자의 법에 따
라 규정된 제재는 이 협약의 위반이 어디
에서 발생되었든지 간에 그 위반을 억제하
기에 적합한 강도여야 한다.

- 결국, 이 가입안은 그 시행을 위하여 국내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3. 검토의견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가입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6

우리나라의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활동 현황

□ 국제해사기구(IMO) 개요

○ (설립 연혁)

- 유엔 해사회의에서 해사자문기구(IMCO) 설립협약 채택 : '48. 3. 6('58. 3. 17 발효)
-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 설립 : '59. 1. 6.
- 기구의 명칭을 국제해사기구(IMO)로 변경 : '82. 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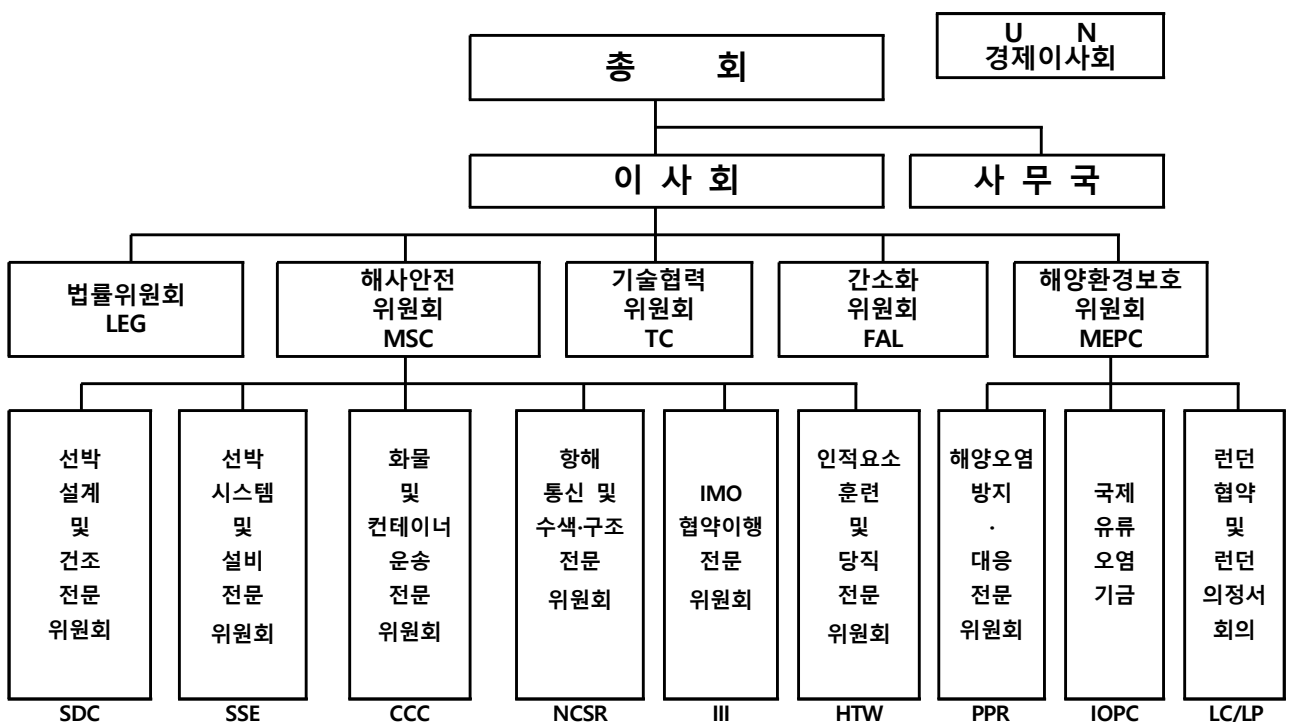
○ (기 능)

- 조선·해운 관련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보상 등 국제규범 제·개정

○ (회 원)

- (회원수) 정회원 176개국, 준회원 3개국(홍콩, 마카오, 파로제도)
- (한국가입) '62. 4. 10. (북한가입 : '86. 4. 16.)

○ (구 성)



□ 이사국 역할 및 분류

- 총 40개국(임기 2년)의 이사국으로 이사회를 구성(연 2회 회의개최)
- 사업계획, 예산안 및 전문위원회 상정안에 대한 검토 및 총회 제출 등

《 이사국 현황('24.~'25.) 》

구분	구성	국가명
A 이사국 (10개국)	주요 해운국	대한민국,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노르웨이, 파나마, 영국, 미국, 라이베리아
B 이사국 (10개국)	주요 화주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스페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C 이사국 (20개국)	지역 대표국	싱가포르, 몰타, 사우디, 튀르키예, 이집트, 멕시코, 필리핀, 칠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바하마, 사이프러스, 모로코, 덴마크, 카타르, 방글라데시, 케냐, 페루, 핀란드, 자메이카

※ 우리나라는 '01.11(제22차 총회)부터 IMO A 이사국으로 **12연속 선출**

□ 우리나라의 IMO 활동

- 제17차 총회('91.11.)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된 후 17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C 이사국 : '91.11~'01.11.6., A 이사국 : '01.11.11~현재)

- IMO 제9대 사무총장* 임기택 당선('15.6.) 및 재임('16~'23, 연임)

* IMO 사무국의 수장으로서 한국인 최초로 당선·재임

- IMO 관련 회의 역대 의장단* 역할 수행

* ① 라종일 전 주영대사('02년 아테네협약 개정외교회의 의장), ② 채이식 교수('99년 IOPC FUND 집행위원회 의장 및 '02.~'05년 법률위원회 부의장, '06~'10년 법률위원회 의장, ③ 임기택 원장('02~'05년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 의장), ④ 선박안전기술공단 최종해('01년도 위험물·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 의장), ⑤ 박영선 국장('12~'13년도 기술협력위원회 부의장)

참고자료 7

선박 재활용(해체)시설 현장사진

□ 해외 선박재활용 시설



□ 국내 선박재활용 시설

